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(안도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6.

발 의 자 : 안도결 · 민형배 · 정진욱
임호선 · 윤준병 · 복기왕
박민규 · 김태년 · 이재관
이언주 · 박지혜 · 김남근
정준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등을 포함한 세입 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2023년과 2024년 모두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올해 국세수입도 당초 6월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2조2천억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, 세수추계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도록 하고,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,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세수추계 오류로

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55조의2 신설 등)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3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2(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)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.

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,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85조의6제4항 중 “제89조제1항”를 “제89조”로 한다.

제8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정부는 제55조의2에 따른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의2 및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 세입예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55조의2(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)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 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,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
제85조의6(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) ① ~ ③ (생략)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,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,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,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	제85조의6(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89조

<u>제1항</u>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⑤ · ⑥ (생략) 제89조(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 제89조(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정부는 <u>제55조의2에 따른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--	---